#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 법률안 (최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40 발의연월일: 2021. 1. 4.

발 의 자:최혜영・이규민・용혜인

고영인 · 김홍걸 · 이광재

송영길 • 허종식 • 정청래

강준현 · 임종성 · 윤준병

김상희 • 박홍근 • 김회재

의원(15인)

#### 제안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노인 등을 위한 급식시설 11,004개소 중 83.4%에 해당하는 9,177개소에서 영양사 없이 급식이 제공되고 있어, 사회취약계층 대상 급식시설의 위생과 영양관리가 안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급식시설에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하고 있지만,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지원 체계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섭취나 소화가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노인·장애인 등 급식 관리 지원을 통한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주요 용어의 정의 및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다.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 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 식관리지원센터, 영양취약계층 급식시설에 대한 감독·지도 및 실 태조사를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법률 제 호

## 노인 ·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 법률안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단체급식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영양을 증진시켜 이용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 2. "사회복지급식소"란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애인 등에게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 관리를 지원할 책무를 진다.
  - ②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영양적으로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인·장애인 등 단체급식 관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 등

-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연합하여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 2.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 · 영양관리 지도
  -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 등 식 생활 교육 및 상담

-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인력의 수, 자격 및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관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로 하여 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1. 노인·장애인 등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 개발·보급
  - 2. 노인·장애인 등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개발
  - 3.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 4.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 5. 노인·장애인 등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노인·장애인 등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업무
- ② 국가는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 감독·지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업무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 센터 및 그 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감독·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장 사회복지급식소 등록 · 지원 등

- 제8조(실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에 필요한 급식소 운영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사회복지급식소 운영자 및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 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9조(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①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사회복지급 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급식의 위생 및 영양 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4장 보칙 등

제1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 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